

■ 판례 동향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관련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인쇄회로기판(PCB)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강화하는 경쟁국 vs 韓 보조금 '0'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0월 14일(통권 제2102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강화하는 경쟁국 vs
韓 보조금 '0'

06 Weekly News

14 현장 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행정안내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 27** 질의응답사례
유아용 치발기의 HS Code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관련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39** 품목분류해설
인쇄회로기판(PCB)의 품목분류
- 55** 세번 바로잡기
제올라이트 혼합물
- 57** 상식 밖의 상품학
공포의 붉은 누룩 원인은 푸른 곰팡이?

최신개정법령

- 60**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68**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바로잡습니다

통권 제2099호(2024.9. 23.) '품목분류해설(39~53p)'의 제8402호 용어 및 설명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정정된 내용은 쿠스트라(www.custra.com/main.do)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강화하는 경쟁국 vs 韓 보조금 '0'

韓 산업경쟁력·경제안보 강화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시급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경쟁국들은 막대한 지원금을 투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제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월 7일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 최근 美·中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인 SMIC에 2억 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소니·소프트뱅크·NTT 등 8개 기업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는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쟁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차전지 업체는 현지 생산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CATL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産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자 일본정부는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혜택을 입지 못한 한국의 주요 이차전지 생산 업체인 LG에너지솔루

선·SK온·삼성SDI 3社の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1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 제품은 중국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2023년 중국 대표 LCD,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와 같은 지원까지 제공 중이다.

일본정부는 2012년 당시 2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나섰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OLED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과 달리 투자 적기를 놓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OLED 시장까지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이 경쟁국에 밀리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환급제도 검토와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통한 정책 및 관련법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정책의 공통점은 정부개입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특히 보조금 정책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점 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는데,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과 올해 세부 부족 상황을 고려해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정책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모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강화한 것에 주목했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총리 산하였던 과학기술부를 작년에 국가 주석이 관할하는 당 중앙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지도부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이후 경제안보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2021년 장관급 조직인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해 총리 주도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경협은 이처럼 주요국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통한 관련 법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하구현 기자 |

정부,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

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하는 한국형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U가 추진 중인 DPP에 따르면, 원료·부품정보,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구축이 시급했다.

이번 용역 과제는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과제 주관부처로 산업부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과제에서 산업부는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와 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진행된다.

DP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방식은 기존에 중앙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중계)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에는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안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U, 일본 등 주요국도 산업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엄청난 활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버넌스·보안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산업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 보장과 함께 산업 데이터의 활성화,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연관 신산업의 창출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중소, 자발적 탄소감축·기후변화 대응력 기른다

중기부,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 위한 자문단 설립 및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문단을 꾸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법령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0일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체계 및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은 집중 토론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말까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자문단 위촉식과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 ‘기후테크 육성 분과’로 운영된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수출 중심 기업으로서는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배출권거래제’, 탄소감축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응해 왔으나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 사업 인증 표준과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 인증 기반의 탄소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도 만든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연구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근거를 마련,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갈 중소기업 탄소중립 미래 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천연가스 수급 안정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싱가포르·일본과 LNG 분야 협력, 주요생산국·수입국 간 조기경보체제 참여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시장 변동리스크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LNG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은 주요국과 협력을 통한 LNG 수급의 유연성 확보와 가격협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산업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간에 체결된 ‘韓·싱가포르 LNG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동·하절기 수요 패턴 차이를 활용한 LNG스왑을 통해 수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MOU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과도 MOU를 체결하고 LNG 도입, 수급 관리 및 트레이딩 등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가스시장 정보 공유, 지식·인력 및 기술교류 등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LNG 시장에서의 수급과 대응역량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도 LNG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및 일본 JERA는 글로벌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정보 교류 강화, 공동구매, LNG 스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 기관 간 약정도 체결해 韓·日 정부, 기업 간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수급불안 시에도 양국의 안정적 LNG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2024 LNG 생산자·구매자 컨퍼런스(PCC)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생산국과 EU, 한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조기경보체제(Early Alert Mechanism) 시범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조기경보체제는 가스전 설비 손상 등 천연가스 공급망에 충격 을 주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망 위기 공유 시스템이다. 또한 각국의 LNG 저장용량, LNG 터미널 이용률, 날씨 등 가스산업의 기초정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정부는 조기경보체제에 참여해 주기적으로 공유되는 기초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국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가스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LNG 국제협력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경제적 도입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글로벌철강포럼,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철강 과잉공급에 따른 생산국 내 산업 피해는 물론 글로벌 무역 왜곡이 심화되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GFSEC는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2016년 G20 항정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023년 5억 5,000만 톤에 달하고 2026년에는 6억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의 증가로 수입을 포함한 철강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GFSEC와의 협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韓,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세계 최대 시장지수 산출기관 중 하나인 FTSE Russell은 10월 8일 ‘2024년 10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며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Russell은 이번 편입 확정발표 후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실제 지수 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편입비중은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WGBI에 편입되면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은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는다.

아울러 국제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 하구현 기자 |

간접수출 기업의 직접수출, 韓 수출액 높이는 디딤돌

2019~2023 간접수출액 연평균 5.5% 증가하며 직접수출 증가율 상회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간접수출 기업의 직접수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10일 발간한 ‘간접수출 기업의 직접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직접수출 대비 간접수출액 비중은 37.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 간접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직접수출 증가율 0.89%를 상회했다. 수출 역성장이었던 작년에도 간접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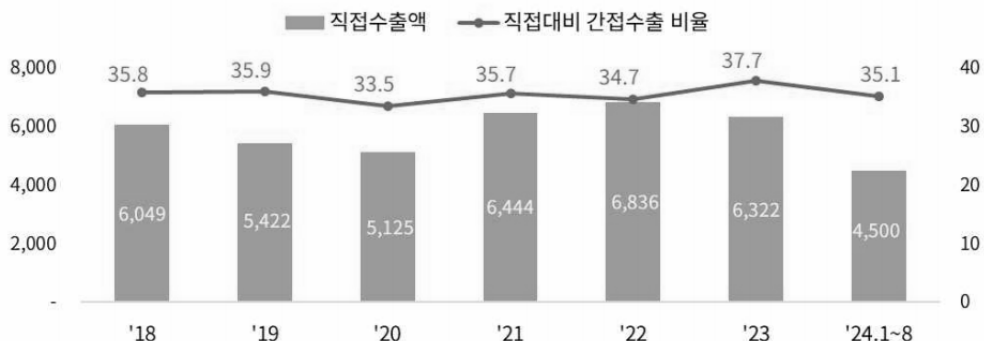
간접수출이란 국내 기업의 수출 제품 생산에 전체 혹은 일부 기여하거나 완제품을 수출 중개업자(무역상사 등)를 통해 해외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무역협회는 간접수출 기업이 향후 한국의 직접수출 저변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조 과정에 참여하며 우리 수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레이어(Player) 역할을 했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축적해 왔다.

지난 5년간 간접수출액은 직접수출액보다 빠르게 성장해 2023년 312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8월 기준 직접수출액 대비 간접수출액 규모가 214.9%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서 직접수출 전환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직접수출 대비 간접수출 규모의 평균은 35.1%다. 무역협회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간접수출 기업의 직접수출을 장려한다면 수출기업 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출액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우리나라 직접수출액 대비 간접수출액 비중 ●

(단위 : 억 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김규원 연구원은 “자동차·선박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입증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산업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체계적인 관리, R&D 투자를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수출 증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무역 상담도 생성형 AI로 ... '트레이드프로 AI 상담' 10월 개시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역상담 서비스 '트레이드프로(TradePro) AI 상담'이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레이드프로'는 한국무역협회가 2022년부터 도입한 디지털 무역상담 서비스로, 12개 분야 51명의 전문가가 무역 분야 일대일 상담(유선·온라인) 및 AI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상담은 AI 검색엔진이 질문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답변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무역협회가 축적해 온 방대한 양의 전문가 상담사례, 무역실무 데이터, 무역 관련 각종 법령, 수출 지원 사업 정보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도입해 신속하고 다양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성형 AI 연계와 더불어 검색 증강 생성 기술(Advanced RAG)도 적용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무역협회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은 “새롭게 오픈한 생성형 AI 기반 무역 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출 기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역 관련 데이터의 AI 학습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무역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 개편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 플랫폼 '이노브랜치(Innobranch)'가 개편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0월 8일 이노브랜치의 개편 소식을 전하며, 10월 16일에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브랜치는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가 2019년 선보인 국내 유일의 영문 기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양방향 매칭이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플랫폼으로 구축한 국내외 28개국 스타트업 5,000개社 이상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367회의 오픈이노베이션과 2,900여 건의 일대일 미팅(Meet up)이 성사됐다.

이번 개편은 무역협회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사용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법인·개인 이용자 구분 등록, ▲직관적 챗봇 개설택·모집·평가·선정 구조, ▲국·영문 병기, ▲각종 통계의 대시보드 구현 등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자의 국적·소재지·인력·투자유치현황 등 주요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또한 ▲맞춤형 사업공고 알림, ▲카카오톡 채널 통한 채팅, ▲외부 시스템(국민연금공단, 크런치베이스 등)과의 정보연계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강화해 스타트업 관련 사업공고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협회 이명자 해외마케팅본부장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넥스트라이즈(NextRise)’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간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노브랜치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식약처, 싱가포르와 MOU 통해 “신소재 식품 공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MSE)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23년 제1회 아프라스(APFRAS,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이후 양국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한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급성장하는 신소재 식품 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세포배양 등 신소재 식품과 혁신적 식품기술 분야 규제 협력 확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식품안전 정보 교환과 전문 인력 교류 등 글로벌 식품 안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싱가포르는 2020년 12월 세계 최초로 세포 배양 식품을 새로운 식품 원료로 승인·상업화하는 등 활발한 신기술 연구와 투자로 신소재 식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식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 우수한 K-식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中 전기차 최대 45.3% 고관세 부과 확정

EU가 10월 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회 무역구제제도위원회에서 진행된 중국 產 전기차에 대한 최대 45%의 확정 상계관세 부과(안)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10월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중국 產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는 유럽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자동차산업 협회는 중국 產 전기차 관세 부가가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내고 “유럽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며 “통상분쟁을 피하는 것이 공동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이에 대해 중국의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유럽 무역 투자 협력을 저해하며, EU의 자체적인 녹색 전환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8일 ‘EU 產 수입 브랜드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EU 產 수입 브랜드에 덤핑이 있어 자국 브랜드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소피 프리마 대외무역부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이라며 “EU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조직문화 변화 이끄는 청년 공무원 모임 ‘혁신 커스텀즈(CustoMZ)’ 발대식

10월 7일 고광호 관세청장은 ‘혁신 커스텀즈(CustoMZ)’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을 의미하는 ‘커스텀즈(Customs)’와 ‘MZ 세대’를 결합해 만든 관세청 정부혁신 어벤저스의 명칭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공감’, ‘소통’, ‘상호이해’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다양한 세대의 조직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관세행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일 잘하고 즐거운 관세청’을 만들고자 결성됐다.

관세청은 혁신 커스텀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혁신미션을 설정해 산하 세관에 공유·전파하고 이를 세관별 특성에 맞게 수행하도록 해서 제도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데이 지정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혁신 커스텀즈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CBAM 대응 제4차 정부 합동설명회 진행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주최로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8일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CBAM 이행 주요 동향을, 한국환경공단에서 CBAM 배출량 산정 주요 동향, 한국품질재단에서 CBAM 기준 배출량 산정방법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실습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EU CBAM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번호 ①)로 할 수 있다.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토론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9일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 등이 참석했다.

동아대 오동윤 경제학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GDP 규모는 1962년 24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6,733억 달러로 700배 가량 증가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진한 혁신과 글로벌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최우각 부회장은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좁은 내수시장, 저성장 고착화, 알리·테무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 불가피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는 “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수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곳에 오면 관세 인하된다? 미국의 '보세구역' FTZ, 어떻게 활용하나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LA총영사관, '미국의 대외무역지대 FTZ' 웨비나 진행

글로벌 경제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관세 최소화, 물류 비용 절감 등의 전략이 중요해졌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은 미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이라면 FTZ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FTZ란 'Foreign Trade Zone'의 약자로 관세가 보류되는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말한다. 美 관세법상 외국 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구역으로 FTZ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월 2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과 LA총영사관은 '미국의 FTZ 제도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웨비나를 열고 미국의 FTZ 제도와 그에 따른 혜택 등을 소개했다. LA영사관의 채봉규 영사는 "FTZ 제도의 활용과 대응 방안을 잘 익힌다면 수출기업으로서는 향후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관세청의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글로벌 무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동 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공급망 위기로 이어져 물류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美·中 무역 갈등은 한국 기업에도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헤쳐나갈 수단 중 하나인 FTZ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FTZ 제도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FTZ 제도에 대한 개념과 외국의 유사한 제도 소개를 맡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의 앤드류 박 회장은 "미국 FTZ 제도는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韓·美 무역환경에서 제도의 이점과 기회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며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FTZ에 대한 이해가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입을 최적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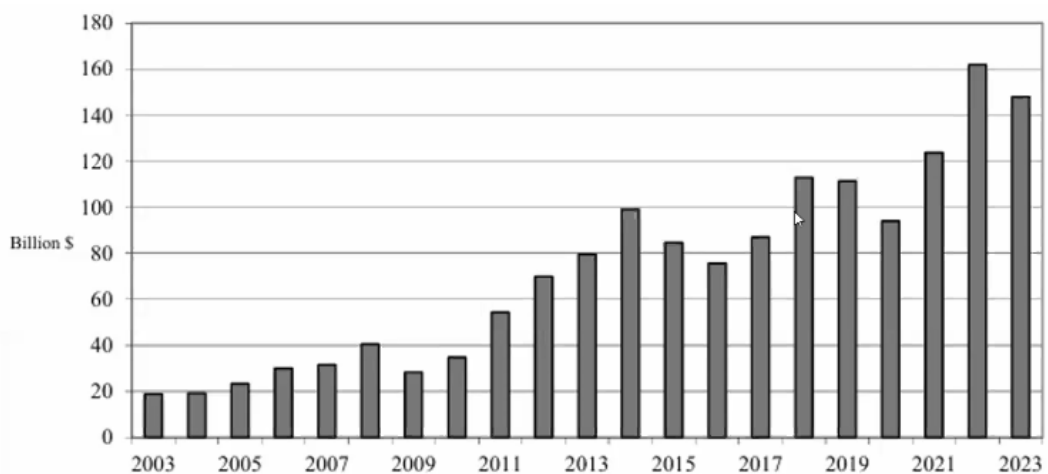
무역 촉진 및 투자 유치하고자 제정된 FTZ 제도

미국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FTZ 제도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정책 중 하나다. 1930년 통과된 美 관세법 이후 크게 침체된 무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으로 투자를 장려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934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 및 통과됐다. 박 회장은 “FTZ 제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투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 등 미국의 FTZ와 유사한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운영된다. 많은 나라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미국 영토에 있지만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영토라는 의미로 ‘대외’ 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라고 칭한다. 대부분 규제 완화나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회장은 “나라마다 규제나 관세 혜택, 지원 등은 다르다. 미국은 국내 제조업 경제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美 대외무역위원회 제85차 연례의회보고서에 따르면 FTZ 제도로 5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그중 생산 분야 종사자가 83%를 차지한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FTZ를 이용한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 2003~2023 FTZ 활용한 수출 ●



출처 : 대외무역위원회 제85차 연례의회보고서

FTZ 제도는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입항구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지정 보안 구역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美 세관 목적상 특별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 구역에서 처리되는 물품은 세관 관할이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세관이 컨트롤하지만 세관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여러 이점과 유용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물론 FTZ의 요건이 있다. 가령 CBP 입항구 60마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차로 90분 이내에 위치해야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이정연 회계사는 “사실 미국 어느 지역이든 FTZ로 지정 가능하다”라며, “물론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전 지역이 커버된다고 보면 된다. 어느 지역에 있는 창고나 공장이 있으면 그 지역을 FTZ로 변환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美 재무부와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FTZ위원회가 FTZ 설립 및 규제 역할을 맡고 있으며, CBP가 FTZ 내 세관 규정을 감독하고 집행한다. FTZ 제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랜티(Grantee)’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서 그랜티 역할을 맡는데 FTZ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FTZ를 관리한다. FTZ를 운영하는 기업과 美 연방기관과의 중재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FTZ위원회와 소통할 수는 없으며 그랜티를 통해서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FTZ를 운영하고 싶은 기업이 승인 및 사용 권한을 받으려면 이 그랜티에게 문의해야 한다.

FTZ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여러 기업이 운영하는 FTZ 내에 사전 지정된 마그넷 사이트(Magnet Sites)가 있다. 주로 항구나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구역 운영자에게 개방돼 있다. 두 번째는 서브 존(사용량 중심 사이트, Usage-driven sites)다. 특정 기업이나 시설의 특정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구역으로 주로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시설에 지정된다. 기업은 지정된 서비스 지역 내 시설에서 신속하게 FTZ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들은 번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가령 FTZ 153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을 뜻하며, SITE 19는 10번가 해양터미널에 위치한 구역을 의미한다.

FTZ로 승인을 받으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물품을 FTA 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고 어느 기간까지든 관계 없이 그 구역에 있는 동안에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즉 관세를 연기하거나 인하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박 회장은 “2024년 기준 미국 전역에 FTZ가 약 272개 운영되고 있다. 전 지역에 걸쳐 분포돼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일리노이 등 주요 산업 및 무역 허브 지역에 많이 있다. 기업들이 세관과 관련된 혜택을 얻기 위해 이런 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관세가 유예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과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무역장벽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즉 미국 제조업체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FTZ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FTZ 제도가 기업에 제공하는 이점

FTZ를 활용하는 산업군으로는 제약부터 자동차, 전자, 석유, 기계 장비, 의류,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FTZ에서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크게 구분하자면 창고 보관(Warehousing)과 제조(Manufacturing)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보세제도의 일환으로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관 FTZ는 재포장이나 시료 샘플링 검사 등이 모두 가능하며 FTZ로 신청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 이와 비교해 제조 FTZ는 보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여기에 조립이나 변형, 생산 공정도 추가된다. 제조용으로 FTZ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FTZ 내에 있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출처 : 이정연 회계사)

앤드류 박 회장과 이정연 회계사는 모두 FTZ의 이점을 설명하며 가장 큰 혜택으로 비용 절감을 꼽았다. 박 회장은 “FTZ에서 보관됐던 물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될 때 관세가 유예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관세 및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특정 목적을 갖고 부과되는 관세는 FTZ 내에서 처리된 물품이더라도 관세 절감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TZ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관세 면제, 관세 연기, 관세 인하, 수수료 및 세금 절감 등이 있다. 가령 FTZ로 물건이 반입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물건이 미국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시점에서야 해당 관세가 부과된다. 즉 FTZ를 활용한다면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초기 진출 단계에서 관세와 관련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또한 FTZ에서 제조한 물품을 미국이 아닌 타국으로 수출할 때는 관세가 면제된다. 즉 부품을 FTZ로 수입한 뒤 조립 및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돼 글로벌 무역에서 상당한 비용 이점을 안겨준다는 의미다.

제조 FTZ로 사용할 경우 부품의 관세율과 완제품의 관세율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으로 적용해서 수입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세율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5~8% 선이지만, 자동차 완제품의 관세율은 2.5%다. 자동차 부품으로 수입신고하기보다 FTZ에서 제조된 완성차로 수입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FTZ 제도를 적극 활용할 만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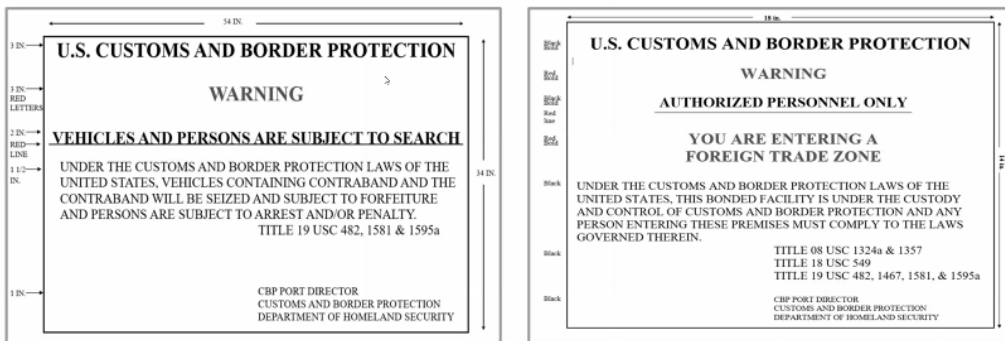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처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물품 재고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FTZ에서 운영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재산세가 면제된다.

수입신고를 건별이 아닌, 주별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품 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물품이 FTZ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일주일치 관세를 모아서 낼 수 있다. 관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물품이 보관 FTZ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달라진다. 즉,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가 절감되지는 않지만, 각종 수수료가 줄어들어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사례도 있다. 기업은 수입 물품 처리 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물품 가격의 0.3464%로 선적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FTZ를 활용하면 MPF도 일주일에 한번 모아서 낼 수 있다.

이 회계사는 “1회 납부 최대 금액인 634.62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물품을 선적별로 계속 금액을 산정하고 여러 차례 납입해야 하지만, FTZ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주별로 묶어서 산정할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금액 634달러씩 일년 52주로 계산하면 3만 3,000달러 선으로 비용 자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일년에 몇 천, 몇 만 건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된다.

Sample FTZ Signage



FTZ 구역임을 알리는 증명서(출처 : 이정연 회계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품이 항만에 도착해서 창고까지 오기까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이 FTZ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항만에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FTZ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앤드류 박 회장은 “관세 절차가 간소화돼 신고를 통합하고 행정적 비용과 부담이 줄어든다. 큰 기업뿐 아니라 소기업도 FTZ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에서 FTZ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FTZ 제도 COST vs BENEFIT

기업을 위한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FTZ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들 수밖에 없다. 초기 시작 및 구축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FTZ위원회와 그랜티 수수료, ICRS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필요하며 FTZ 관리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연간 관리 및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

결국은 FTZ를 시작하기 전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정연 회계사는 “물론 소기업도 당연히 FTZ를 운영할 수 있지만, 쉽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 부문에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검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TZ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만만치 않다. 하나는 물품의 이동이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항만에 도착한 순간부터 반입·반출되기까지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회계사에 따르면,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ERP나 보관관리 시스템으로 는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 물품 이동 추적이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보안이다. 물품의 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에서 공장의 펜스 유무, CCTV 설치, 보안관리 직원, 게이트 유무 등의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관 직원이 일년에 한 두차례 직접 방문해 점검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창고를 다른 기업과 공용으로 쓰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보안 요건은 잘 갖추고 있어 큰 투자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FTZ위원회로부터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를 FTZ로 허가를 받은 뒤 CBP는 물론, 관할 지역 세관으로부터 활성화 승인까지 받으면 FTZ로 운영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사의 수입 및 수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FTZ 활용 방안을 잘 이용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기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다만 경제적인 이점만 바라보고 섣불리 시작할 일은 아니다.

이정연 회계사는 “FTZ 승인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이 절대 짧게 걸리지 않다. 전혀 이슈 없이 원활하고도 매우 빠르게 통과된다면 6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8~12개월이 소요되며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1년에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몇 년간 운영할 것인지 기업의 상황과 비용을 포함해 타당성 검토를 꼼꼼히 하라”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자동차 폐차장에서 재활용을 위해 구입한 중고 자동차 부품(Used Alternator와 Start Motor)을 완전 분해 →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 → 선별된 부품을 재가공해 새로운 부품으로 제조 → 재제조 부품과 일부 새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 → 중고 부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답변 재사용 목적으로 수집된 중고 자동차 부품은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완전생산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로서의 FTA 적용 요건은 크게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 요건, 3. 원산지상품 요건, 4. 절차 요건, 5. 운송 요건이 존재하나, 실무상 좁은 의미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3. 원산지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중 '2. 품목요건'과 '3. 원산지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HS Code와 연관이 깊다. 품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물품의 수입관세율의 FTA 혜택이 존재해 FTA를 적용할 실익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또한 FTA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또한 HS Code 및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물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 등 수출물품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든 물품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이뤄질 것이다.

(2)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or produced), 원산지재료 생산품(PE, Produced Entirely),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생산기준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없이 오직 당사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그 완전생산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한·EU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위에 소개한 한·EU FTA의 규정만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일반기준’과 물품별 적용이 가능한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고, ① 완전생산기준(제2조 가), ② 원산지재료 생산품(제2조 다)은 ‘일반기준’의 영역에,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제2조 나)은 ‘품목별 기준’의 영역에 속해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은 일반기준 외에도 품목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적용된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그 안에서 완전생산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가장 원칙적인 개념에서의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이는 협정별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때 일방 또는 양 당사국(one or both of the Parties)인지 당사국(a Party) 또는 수출당사국(the exporting Party)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완전생산 적용 물품에 누적기준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인정	당사국	수출당사국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콜롬비아	EFTA·EU·튀르키예·중국·뉴질랜드·중미·영국·RCEP·이스라엘	ASEAN·인도·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또한 일반기준의 완전생산기준에서는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또는 역내)에서 생산(획득)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생산기준의 적용 목적상 공산품의 생산에 알맞은 ‘제조 또는 생산’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완전생산 간주 물품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대상은 광물성, 식물성 생산품 등 자연에서 나오는 품목들과 우주 취득 물품, 폐기물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품목들이다.

한·EU FTA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의 의미를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조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밋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차.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재활용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회수)한 중고 자동차 부품(Used Alternator와 Start Motor)을 완전 분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 선별된 부품을 재가공해 새로운 부품으로 제조, 재제조 부품과 일부 새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해 중고부품(Alternator와 Start Motor)과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 상황에서 해당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주제가 되는 조항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4조 자호에 해당되는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에 관한 것인데, 이번 질문 사례는 새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최종적인 물품 자체가 아닌 재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중고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규정을 충족한다면 그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서 원산지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실제 제조되는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반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라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중고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한·EU FTA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고 자동차 부품은 실무상 해당 부품의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 원가 정보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비원산지 재료로 판단될 것이고, 결국 최종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2)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

한·EU FTA에서는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중고 물품(used articles)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의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제시된 중고 자동차 물품은 국내에서 수집(구매, 회수)된 것이며, 중고물품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중고 물품은 원재료 회수용(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또는 폐기물 용도(for use as waste)로만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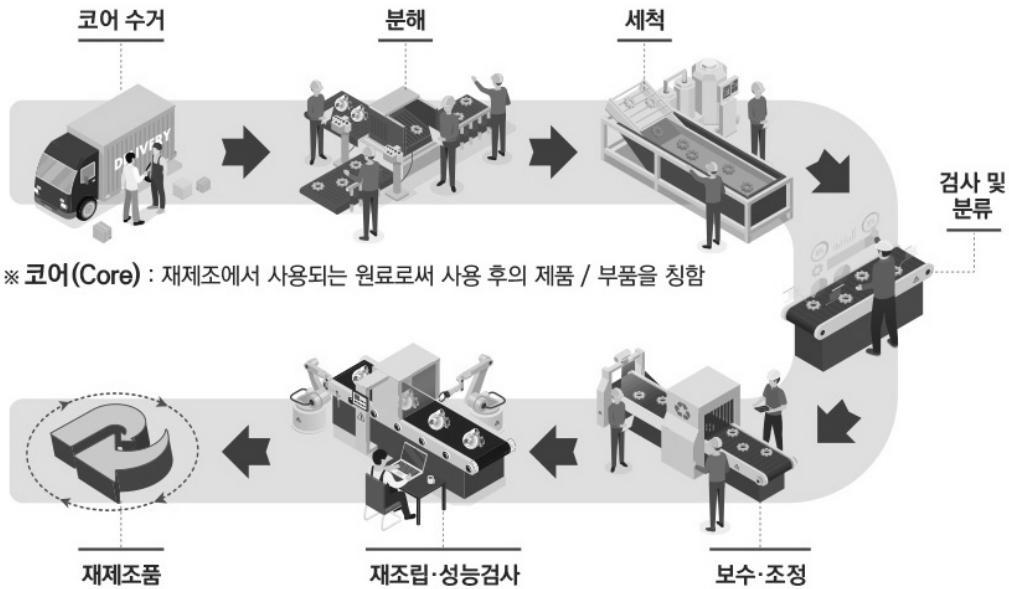
일부 협정에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예 : 한·인도 CEPA 등)가 있지만, 한·EU FTA에서는 관련 상세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해당 원재료가 폐기물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고, 재제조(Remanufacturing)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재제조를 위한 중고 자동차 부품이 원재료 회수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3) 재제조 물품

재제조 물품은 폐기 단계에 있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에서는

재제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정보플랫폼

제품에 대한 재사용에 관한 부분은 재제조뿐만 아니라 재활용(Recycling)이나 재이용(Reuse)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재활용은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해 분해, 분류, 파쇄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하는 것을 말하고, 재이용은 사용 후 제품·부품의 재사용을 위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는 최소한의 가공 공정으로 적은 비용, 자원, 에너지를 투입해 사용 후 제품을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 재활용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제조 기업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산업법」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제조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승용/상용자동차)에 관한 재제조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나 건설·산업기계(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컨트롤 밸브 등)에 관해서도 재제조 제품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

(4) 질문 & 답변 해석

한·EU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에 적합하다는 의미에 대한 별도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답변으로 한·EU FTA의 경우 회수한 중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상세 사유로는 협정에서는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을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재료의 정의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부품(part)을 회수해 재제조하는 때에는 원재료 회수용(the recovery of raw material)으로 여길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제조 물품(상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이를 재생상품(용품, recovered goods)으로서 완전생산기준 충족 품목으로 인정하는 협정도 존재하는데, 한·미 FTA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상 재제조 상품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4.02호로 분류되는 상품 중 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6.22조(정의)에서 정의된 재생용품으로 구성되고, ②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 수명을 가지며,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서는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용품)에 대한 정의 및 완전생산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재생용품(recovered goods)이란 ①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②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세척·검사·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또한 재생상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기준을 규정하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을 완전생산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협정에서는 ‘recovered goods’라는 용어를 재생용품 또는 재생상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문 표현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에서는 재제조 상품에 활용되는 재생용품(상품)에 대해 PSR을 적용하지 않고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에서는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이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본 질문 & 답변 사례를 추가로 보면 해당 중고 자동차 부품은 '부품의 회수'용으로 재제조 공정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EU는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재제조 상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충족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산업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효가 10년이 넘은 한·EU FTA에서는 국내 재제조 산업에 대한 성장과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재제조 상품에 사용되는 재생상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규정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EU 27개국 간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개정의 논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고의 논의사항이나 한·EU FTA PSR의 개정 등 기존의 한국과 EU 및 EU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협상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유아용 치발기의 HS Code

유아용 치발기는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3926.90호에 ‘기타’를, 제3926.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발육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의 ‘기타’의 제3926.9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11) 젓꼭지(젓먹이의 젓꼭지, Pacifiers)”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해당 임차료로 과세가격을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을 조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거래가격 이외의 대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제2방법(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내지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방법 내지 제5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통관 / 성인용품 통관

리얼돌을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해 수입할 수 없습니다.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통관 관련 필요 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032-454-2015), 통관검사3과(032-452-3287), 평택세관 특송통관과(031-8054-7122)]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 / 소재지에 따른 수출신고 절차

수출 물품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다면 어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신고서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물품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라면 인천세관이 관할세관이지만, 인천세관의 수출신고는 통관검사4과와 신항통관과로 분리돼 있어 지역에 따라 관할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구역은 우편번호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수구의 송도1동과 3동은 신항통관과로 분류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는 유니패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중략> ...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관련 판례 해설

권종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베어링 및 자동차 기계부품 등을 수입·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자회사로서, 같은 계열사인 영국 소재 수출자(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볼베어링을 수입하면서, 인증수출자인 이 사건 수출자가 발생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또는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했으며,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고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봤고, 舊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국 관세당국에 위 신고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을 했다.

라. 이에 영국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한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된 30개의 모델 중 4개 모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 자격이 없고, 나머지 모델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피고는 舊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원고에게 관세 ○○○○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원, 위 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원을 각 부과했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77282 판결), 2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누60269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원고 승)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3. 3. 16.자 2022두69391 판결).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증수출자인 이 사건 수출자가 작성한 아무런 형식적 흠결 없는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원고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까지는 상세히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산지신고서 형식상 유효성에 대한 원고의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다.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 인증수출자인 원고의 지위, 신고납세방식인 관세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이처럼 가산세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충족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舊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형식적 요건의 충족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인 이 사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이 서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물품이 유럽연합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고 명시

돼 있다. 원산지 의정서의 '부속서 3' 및 舊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7]이 정하는 사항도 모두 기재돼 있다. 달리 형식상 흠결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수출자를 상대로 한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의 확인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14. 1.경 이 사건 수출자의 담당 직원과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이 사건 수출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FTA 관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모든 요건충족)”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된 거래 개시 직전에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확인 내용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괄적·일반적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문제 삼는 내용은 결국 비원산지 원재료의 정확한 가격이나 그것이 이 사건 물품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 등이 될텐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수출자의 지배·통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거래 내지 계약은 대향적(對向的) 구조를 이루는 쌍방 당사자 간에 성립되는데, 이때 판매가격의 결정 요소가 되는 원재료의 가격, 그중에서도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이나 그 비중 등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선뜻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 봐도 부자연스럽다. 이를 타하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2) 원고는 2000. 0.경 피고 측으로부터 한·EU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영국세관이 이 사건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인증서 사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그 무렵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인 2000. 00. 00. 다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그동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3) 이러한 경과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 직전 그리고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내지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나름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정확한 사실 확인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재료 가격변동, 세액 심사결과 등에 비춰 본 원고의 의무이행 기대 가능성

1)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거래는 2015 ~ 2017년 3년간에 걸쳐 계속돼 왔다.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는 상당수 영국이 아닌 인도로부터 공급돼 왔고, 그 공급 가격이나 관련 환율이

거래 기간 수시로 변동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특혜관세를 신청 이전부터 그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하지만 거래 개시 직전에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특혜관세를 충족 여부 자체를 확인했다면, 그 당시에 수출자의 지배·통제 영역에 속하는 비원산지 원재료 가격 등에 관해 보다 엄밀하게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그후 3년간에 걸친 거래 기간 동안 비원산지 원재료의 공급 가격이나 관련 환율에 관한 일반적 변동 상황을 일일이 체크해 그때마다 이 사건 수출자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묻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하더라도, 수입신고자에게 그와 같은 주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이러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령의 취지나 무역거래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계약상대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앞서 본 검증 결과(세액 심사 결과)를 보더라도, 검증 요청된 30개 모델 중 4개 모델에 한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됐다. 동일한 모델에 해당하는데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불과 1 ~ 10여 일 차이를 두고 그 판정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해 원고의 정확한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 관련

1) 원고는 본점이 독일에 있는 본사의 자회사다. 이 사건 수출자 역시 본사의 자회사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말하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다고 해서 수출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공유하거나 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곧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2)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적인 두 개의 회사인데다가, 양 회사가 국적까지 달리 한다. 특히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는 모두 독일에 본사를 둔 자회사일 뿐, 양 회사 사이에 어떤 지배·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 회사의 지분을 가진 본사를 매개로 해 양 회사 간에 비원산지 원재료 가격 등에 관련된 정보가 서로 공유돼 왔다는 사정을 찾기도 힘들다.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FTA 가산세 면제

지침'이라 한다) 그리고 이후 제정된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조건부 면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관계자인 수입신고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거래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존재 이유나 가치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보듯이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서로 달라지거나 그 충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단기간 내에도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사정만 들어 원고에게 정확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의 기대가 가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4. 대상 판결에 대한 해설

가. 가산세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해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¹⁾

가산세 부과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²⁾ 한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해 조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³⁾

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나.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관련 법령 등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6조는 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도(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제2항).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해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경우 세관장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36조가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징수해 왔으나,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한 것이다.⁴⁾

이에 관세청에서는 이 법령의 통일된 집행을 위해 2017. 7. 5. 「FTA관세특례법령상 가산세 면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나, 해당 지침에서는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세원심사과-1092, 2010. 3. 26.)」을 준용하고 있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 정도만 기재하고 있을 뿐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후 관세청은 2018. 9. 3. 「FTA 가산세 면제 지침」을 제정했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침 제4조 제2항에서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관세법」상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조건부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봐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심사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20. 4. 9. 앞서 살펴본 2개 지침을 모두 폐지하면서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그 주요 내용은 해당 지침 별표에 포함돼 있다. 다만 위 「FTA 가산세 면제 지침」과 비교해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2024. 3. 1. 해당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15. 12. 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다.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그 원산지신고서에는 “이 서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번호)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물품이 유럽연합의 특혜 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즉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번호와 이 사건 물품이 유럽연합 원산지 제품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한·EU FTA와 관련 법령의 기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 등에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예 : 부가가치비율 50%) 및 그 충족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수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가 한·EU FTA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에게 수입신고 시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수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에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판정 적용에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그 충족 여부까지 매번 확인해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또한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는 모두 독일 본사의 자회사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다. FTA 가산세 면제 지침과 이후 제정된 「FTA 가산세 면세 지침」에서는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산세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FTA 가산세 면세 지침」 제4조 제2항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적 가산세 면제’ 대상인 경우라도 「FTA 가산세 면세 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건부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해 수입자 의무 이행 여부를 심사해 가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원칙적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산세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수입자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한편 「FTA 가산세 면제 지침」 등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⁵⁾

따라서 「FTA 가산세 면제 지침」 등에서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심사 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취지는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 즉,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일된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가산세 면제 사유, 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일 뿐, 관련 법령이나 법리의 범위를 벗어나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와는 다른 기준이나 잣대로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4) 다만,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관세법」 제38조 등),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해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신고납세방식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췄는지를 수입자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만 만연히 신뢰한 것을 두고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⁶⁾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6)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 67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38705 판결(대법원 2019. 2. 18.자 2018두62225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돼 확정)

이와 같은 취지로 법원에서도 “한·ASEAN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책임하에 적용받은 것으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고⁷⁾, “수입자로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를 한·ASEAN FTA 협정 원산지규정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 <중략> ...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준에 의한 원산지 증명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⁸⁾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한·EU FTA 및 이 사건 의정서, 舊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스스로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⁹⁾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수입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정확한 가격이나 그 비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결과(충족 또는 불충족)’ 정도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7)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구합23470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누38364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38705 판결(대법원 2019. 2. 18.자 2018두62225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돼 확정)

인쇄회로기판(PCB)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I. 개요

인공지능(AI) 시대는 전자기기의 성능과 기능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와 인쇄회로기판(PCB)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I 기술은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며,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와 PCB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 CPU(중앙 처리 장치), GPU(그래픽 처리 장치), FPGA(현장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는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PCB는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전자기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연결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PCB는 더 높은 밀도, 소형화,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된다. AI와 머신러닝의 발전에 따라 고속 데이터 전송과 신호 무결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빌드업(Build-up) PCB, HDI(High-Density Interconnector) PCB 등과 같은 고밀도 PCB 기술이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AI 시대 반도체와 PCB는 전자기기의 성능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는 강력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PCB는 복잡한 전자회로를 구성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발전은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와 PCB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서는 AI의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인 PCB의 품목분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II. 인쇄회로기판(P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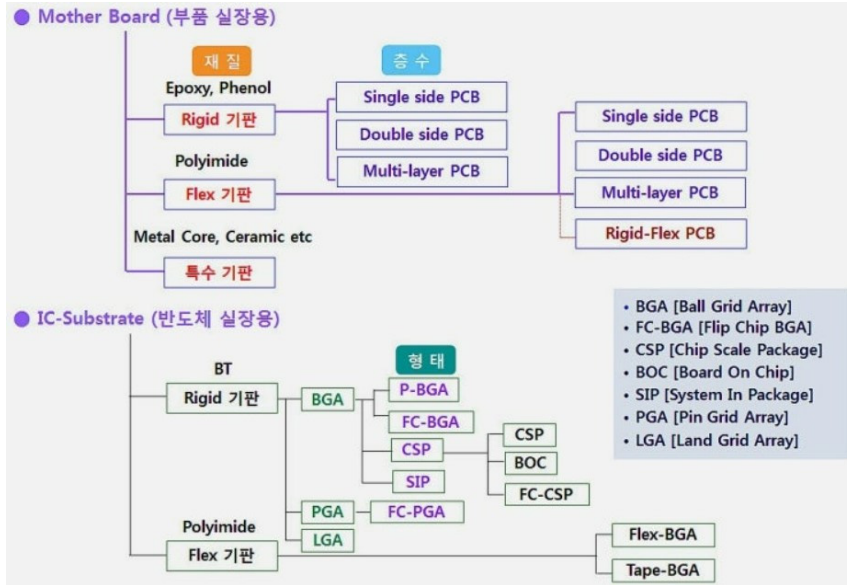
□ PCB란?

PCB는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로, 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한다. PCB는 전자장치에서 부품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판이다. 일반적으로 얇은 절연성 물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섬유 위에 구리 같은 전도성 재료를 인쇄해 전기회로를 형성한다.

□ PCB의 종류

인쇄회로기판은 설계와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각 종류는 용도에 맞는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한 설계가 적용되며 PCB의 주요 종류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PCB의 일반적인 분류 ●



출처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1. 층 집적도에 따른 분류

1) 단면 PCB(Single-sided PCB)

회로가 기판의 한쪽 면에만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쇄회로기판이다. 이 PCB는 절연성 기판 위에 전도성 구리 패턴을 인쇄해 전자부품 간의 전기적 연결을 제공한다. 회로가 한쪽 면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단면 PCB는 복잡한 회로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전자기기, 예를 들어 리모컨이나 계산기, 간단한 가전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회로 밀도가 높거나 복잡한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복잡한 설계에는 양면 또는 다층 PCB가 필요하다.

2) 양면 PCB(Double-sided PCB)

회로가 기판의 양쪽 면에 형성된 인쇄회로기판이다. 기판의 양면에 전도성 구리 패턴이 인쇄되며, 회로를 연결하는 '비아(Via)'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해 양쪽 면의 전기적 연결이 이뤄진다.

양면 PCB는 단면 PCB보다 복잡한 회로 설계가 가능하며, 더 많은 전자부품을 장착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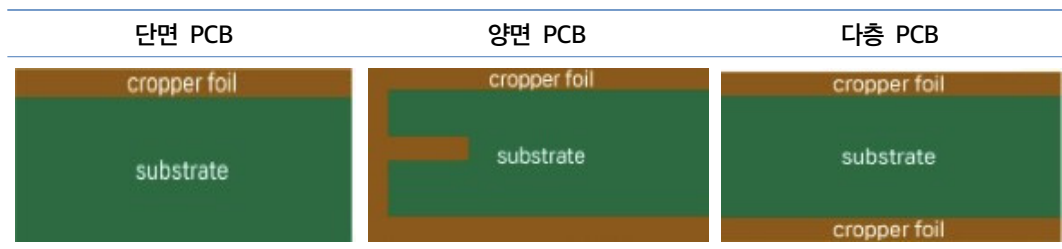
양면 PCB는 신호 전송이 빠르고 전력 전달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자기기, 컴퓨터 부품, 가전제품 등에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단면 PCB에 비해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다.

3) 다층 PCB(Multi-layer PCB)

여러 개의 전기 회로층이 기판에 쌓여 있는 복잡한 형태의 인쇄회로기판이다. 다층 PCB는 두 개 이상의 전도성 구리층이 절연층으로 분리돼 겹쳐진 구조로, 각 층의 회로는 비아(Via)를 통해 상호 연결된다. 다층 PCB는 회로 밀도가 높고 복잡한 전기적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다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층 PCB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을 요구하는 장치에 적합하며, 컴퓨터의 메인보드, 고성능 서버, 통신 장비, 항공 우주 기기, 그리고 의료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특히 신호 간섭을 줄이고 전자기 간섭(EMI)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뢰성이 중요한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 층 직접도에 따른 분류 ●



출처 : ㈜화인스텍

2. 외관 재질에 따른 분류

1) 연성 PCB(Flexible PCB)

유연한 기판을 사용해 다양한 형태로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이다. 주로 폴리이미드(PI, Polyimide)와 같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전자장치가 필요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된다. 연성 PCB는 가볍고 공간 절약이 가능하며, 기기의 내부 설계에 따라 자유롭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카메라와 같은 소형 전자제품에서 많이 사용되며 또한 케이블 대신 플렉서블 기판을 이용해 전자부품 간 연결을 단순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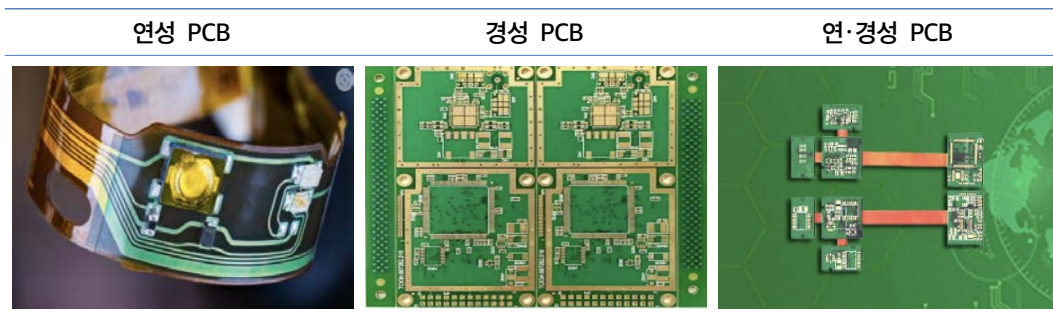
2) 경성 PCB(Rigid PCB)

딱딱하고 구부릴 수 없는 견고한 기판으로 제작된 인쇄회로기판이다. 일반적으로 에폭시 강화 유리 섬유(예 : FR4)와 같은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지며, 한 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구부리거나 변형할 수 없다. 경성 PCB는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전자부품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 컴퓨터, 텔레비전, 가전제품, 자동차 전자 시스템 등 대부분 전자제품에 사용되며,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신뢰성이 높은 기판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경성 PCB는 단면, 양면, 다층 형태로 제작될 수 있으며, 회로 밀도와 복잡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3) 연·경성 PCB(Rigid Flexible PCB)

경성 PCB와 연성 PCB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로, 딱딱한 부분과 유연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쇄회로기판이다. 연·경성 PCB는 경성 부분에서 주요 전자부품을 고정하고, 연성 부분을 통해 좁은 공간이나 구부러진 경로에서 부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기판은 군사용 장비, 의료기기, 항공 우주 산업,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사용되며, 공간 절약이 필요하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 장점으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연성과 구조적 강도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점이 있다.

● 외관 재질에 따른 분류 ●



3. 절연 재질에 따른 분류

1) FR-4 PCB

FR-4는 ‘Fiberglass Reinforced Epoxy’의 약자로, 유리섬유를 에폭시 수지로 강화한 절연 재료이며 PCB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재질이다.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며 높은 절연저항, 그리고 우수한 열 저항성을 제공한다. 컴퓨터, 가전제품, 통신 장비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인해 PCB의 표준 재질로 여겨진다. 다만 유연성이 없고 고온 환경에서는 성능에 한계가 있다.

2) 폴리이미드 PCB

폴리이미드는 유연성과 고온 저항성이 뛰어난 절연 재료로, 주로 연성 PCB와 같은 유연한 기판 제작에 사용된다. 이 재료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 우주 항공, 군사용 장비, 의료기기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연성이 매우 높아 구부리거나 움직여야 하는 전자기기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3) CEM-1 및 CEM-3 PCB

CEM-1(Composite Epoxy Material-1)과 CEM-3는 FR-4보다 저렴한 대체 재료이며 주로 저가형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CEM-1은 기판의 한쪽 면에만 유리 섬유가 포함된 재료이고, CEM-3는 양쪽에 모두 유리 섬유가 포함돼 있다. 이 재료는 적당한 기계적 강도와 절연 성능을 제공하지만, 고온이나 복잡한 회로를 요구하는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용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간단한 회로 설계 등에 주로 사용된다.

4) 알루미늄 PCB

알루미늄 PCB는 금속 기반 기판으로 열 방출 능력이 뛰어나 고출력 LED 조명, 전력 변환기, 자동차 전자장치와 같은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전자제품에 적합하다. 알루미늄 기판은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해 과열을 방지하고,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 기판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다만, 다른 재료에 비해 무겁고 제조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5) 테프론 PCB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으로 만든 테프론은 낮은 유전 손실과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는 고성능 절연 재료로 주로 고주파 통신 장비나 마이크로파 회로와 같은 고속 신호 처리가 중요한 분야에 사용된다. 테프론 PCB는 높은 주파수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며, 항공 우주, 레이더, RF 통신 등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다.

6) 세라믹 PCB

세라믹 PCB는 열전도율과 내열성이 높은 절연 재료로 극한의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고출력 반도체, 전력 모듈 등과 같이 과열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며, 세라믹의 우수한 절연성과 내열성 덕분에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그러나 다른 절연 재료에 비해 무겁고 제조 비용이 높다.

4. 패키지(Package)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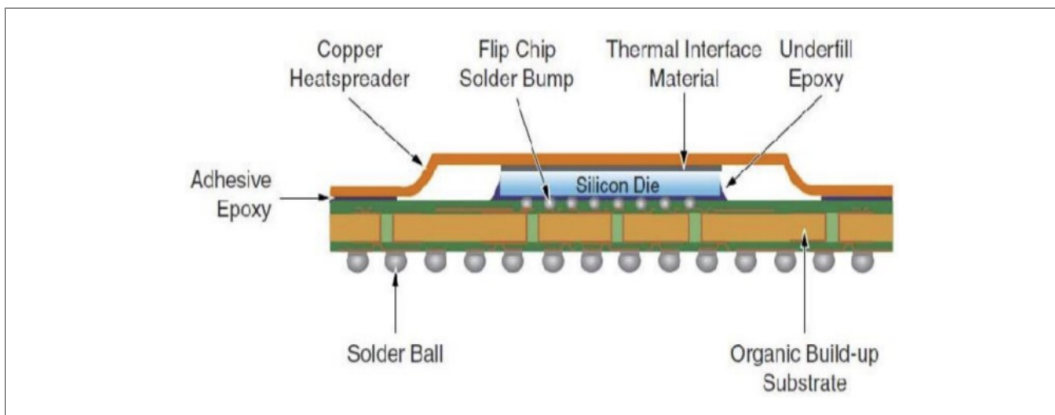
1) BGA(Ball Grid Array)

BGA는 전자부품을 PCB에 연결하는 패키지 유형 중 하나로 고밀도 회로와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BGA 패키지는 부품의 하단에 작은 납땜 볼이 배열된 형태로 이 볼들이 PCB의 패드에 맞닿아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기존의 핀 타입 패키지보다 더 많은 입출력 핀을 제공하며 더 작고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어 고성능 IC 칩, 특히 CPU, GPU, 메모리 모듈 등에 사용된다. BGA는 열 방출 성능과 신호 전달 속도가 뛰어나서 고속 데이터 처리와 전력 관리가 중요한 전자기기에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모바일 기기, 5G 통신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에서 BGA 패키지가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

FC-BGA는 반도체 칩을 PCB에 직접 부착하는 패키지 유형으로 BGA의 한 형태다. 이 기술에서는 반도체 칩이 뒤집힌 상태로 배치되며, 칩의 하단에 위치한 작은 납땜 볼이 PCB의 패드에 직접 연결된다. FC-BG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속 성능이다. 반도체 칩의 접착면이 PCB와 직접 연결돼 전기적 저항이 낮아 신호 전송 속도가 빨라지며 이는 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성능 프로세서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같은 부품에 사용되며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한다. 또한 FC-BGA는 열 관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이 구조는 열 방출이 효율적이어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서버, 데이터 센터 및 기타 고성능 컴퓨터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 FC-BGA의 단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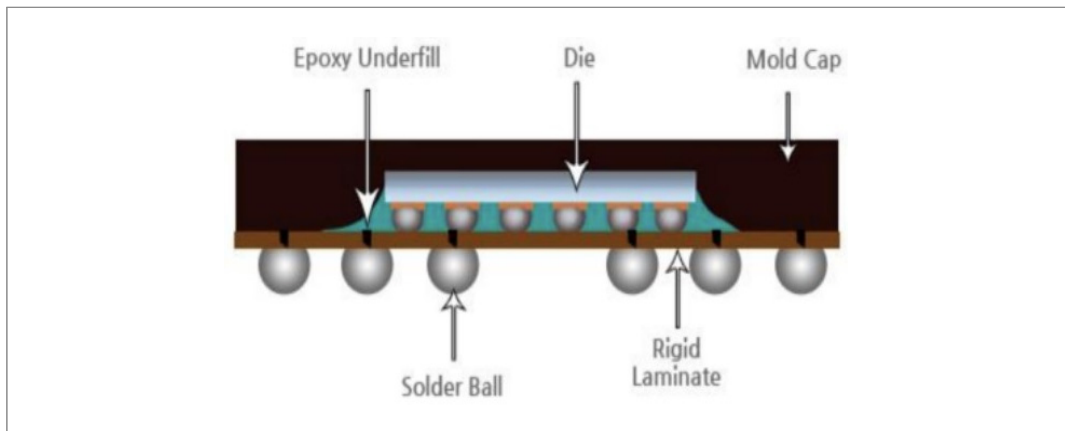


출처: 하나금융투자

3) CSP(Chip Scale Package) 및 FC-CSP

CSP는 반도체 칩을 소형화해 패키징한 형태로 칩의 크기와 패키지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CSP는 일반적으로 칩의 사이즈가 1.0 ~ 1.2배의 패키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패키지 방식에 비해 훨씬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CSP는 특히 소형화가 중요한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장비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 FC-CSP의 단면도 ●



출처 : 하나금융투자

4) SIP(System in Package) 및 SOP(Small Outline Package)

SIP와 SOP는 각각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한 종류로 전자기기에서 컴팩트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두 패키지 기술은 목적이 비슷하지만, 구조와 용도에 차이가 있다. SIP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이나 구성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 내에 집적해 전체 시스템을 소형화한 형태다. SIP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프로세서, 센서 및 기타 전자회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패키지 내에서 상호 연결돼 작동한다. SIP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효율성이다. 그러나 여러 칩이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SOP는 작은 크기와 얇은 형태로 설계된 패키지 유형으로 주로 표면 실장(SMD, Surface Mount Device) 기술에 사용된다. SOP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IC 칩의 핀들이 패키지 측면에 배열돼 있으며, PCB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SOP는 소형화의 장점이 있다. 작은 크기로 인해 PCB에서 더 많은 부품을 배치할 수 있어 회로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SOP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패키지에 비해 신호 전송 속도나 열 방출 성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5) BOC(Bump-on-Chip)

BOC는 주로 집적회로(IC) 칩의 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이 기술은 칩의 표면에 작은 범프를 형성해 이를 통해 PCB(인쇄회로기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BOC 기술은 주로 고밀도 회로 설계 및 소형화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된다.

6) POP(Package on Package) 및 PIP(Part in Package)

POP와 PIP는 소형화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두 기술 모두 여러 개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 내에 집적해 전자기기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먼저 POP 기술은 두 개 이상의 패키지를 수직으로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하단의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칩이나 프로세서와 같은 핵심 부품으로 구성되며, 상단의 패키지는 추가적인 기능이나 메모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POP 패키지는 주로 모바일 기기,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된다. 반면, PIP 기술은 하나의 패키지 내에 여러 개의 반도체 부품을 집적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PIP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능을 갖춘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기술은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며, 특히 고급 기능을 필요로 하는 모바일 기기와 IoT 장치에 적합하다.

7) MCP(Multi-Chip Pack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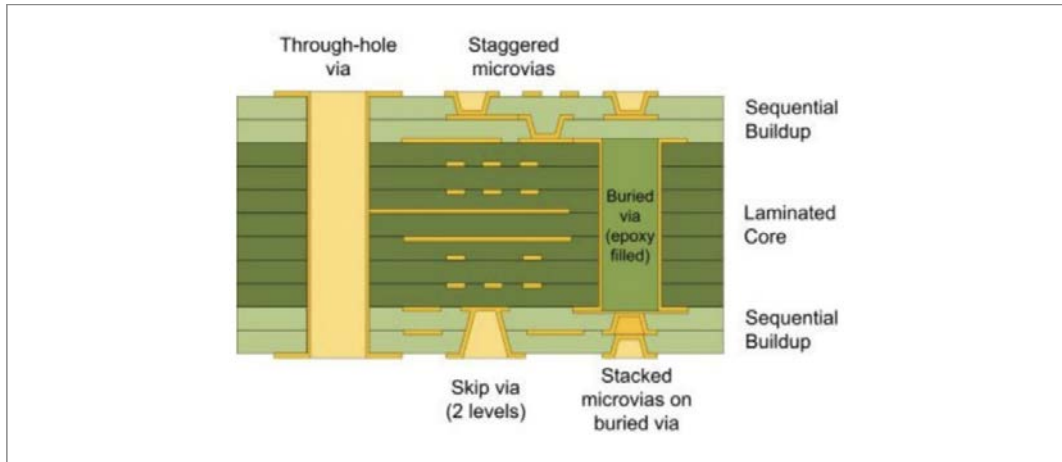
MCP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해 구성하는 패키징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주로 모바일 기기, 디지털 카메라, 게임 콘솔 및 기타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한다.

5. 설계 밀집도에 따른 분류

1) HDI(High-Density Interconnector) PCB

HDI는 고밀도 상호 연결 기술을 활용한 인쇄회로기판(PCB)으로 현대 전자기기에서 요구되는 높은 성능과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PCB의 한 형태다. HDI PCB는 좁은 핀 간격, 다수의 층, 미세한 구멍 및 복잡한 회로 배치를 통해 많은 구성 요소를 적은 면적에 집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HDI는 모바일 기기, 태블릿, 컴퓨터 및 고급 통신 장비와 같은 다양한 고성능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 HDI의 단면도 ●



출처 : 하나금융투자

2) 임베디드(Embedded) PCB

임베디드 PCB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기 내에 내장되는 인쇄회로기판(PCB)으로 일반적으로 소형화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유형의 PCB는 다른 부품이나 시스템에 통합돼 작동하며, 전자제품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모바일 기기, 의료 장비, 자동차 전자장치,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3) 임피던스(Impedance) PCB

임피던스 PCB는 특정한 임피던스 특성을 가진 인쇄회로기판(PCB)으로 주로 고주파 및 고속 신호 전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PCB다. 이 PCB는 전자회로에서 신호의 반사, 왜곡 및 손실을 최소화해 신호 품질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임피던스 PCB는 통신 장비, RF 회로, 고속 데이터 전송 장치 및 기타 복잡한 전자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4) 빌드업(Build-up) PCB

빌드업 PCB는 여러 개의 기판 층을 쌓아올려 구성된 인쇄회로기판(PCB)으로 고밀도 회로 설계와 복잡한 전자기기에서 주로 사용된다. 제작은 각 기판 층을 점진적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회로와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장치 및 IoT 기기 등 고급 전자제품에서 널리 활용된다.

III. 경합세번

다음 물품은 PCB의 일종인 IC 기판(IC Substrate) 물품들이다. 이들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다.

□ FC-CSP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PCB에 실장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패키징 기판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분류할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에 분류할지 여부.

□ FC-BGA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PCB에 실장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패키징 기판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분류할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에 분류할지, 제8532호의 축전기에 분류할지 여부.

□ 다층회로기판(MLB, Multilayer board)의 반제품

다층회로기판의 반제품으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분류할지 제7409호의 '구리의 판'으로 분류할지 여부

품목번호	품명	세율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19	기타	
9000	기타	기본 8%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10 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2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23 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양허 0%
8534	인쇄회로	
00	인쇄회로	
9000	기타	기본 0%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42	전자집적회로	
3	전자집적회로	
90 0000	부분품	기본 0%

IV.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7409호의 용어

구리의 판(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7409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熱間) 압연이나 냉간압연하여 얻으며 스트립(strip)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plate)과 시트(sheet)를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무늬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제15부 주 제9호 라목].

□ 관세율표 제8532호의 용어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셋)으로 한정한다]

■ 제8532호 해설서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 물질(유전체, 예 : 공기·종이·운모·기름·수지·고무와 플라스틱·도자기·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導電面 : conducting surf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 <중략> ...

그 특성(형태·사이즈·정전용량·유전체의 종류 등)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다만, 이 호에는 어떤 타입·제조방식·용도라도 가능하며 모든 축전기를 포함한다.

... <중략> ...

(A) 고정식 축전기(fixed capacitor)

고정식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가변시킬 수 없는 것이다. 고정식 축전기에는 건식 축전기·유침 축전기·가스침지 축전기·유입 축전기와 전해 축전기의 주요한 형이 있다.

- (1) 건식 축전기에 있어서는 극판과 유전체가 보통 적층된 판·압연된 스트립(strip)이나 박(foil)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건식 축전기의 어떤 것은 덮개용의 금속이 고정된 유도체에 화학적 처리나 열처리를 해서 사용한다. 건식 축전기는 클램프로 장비된 박스 속에 밀폐되기도 하며 박스가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 (2) 유침 축전기는 건식 축전기와 유사한 것이나 유전체(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플라스틱필름과 종이의 것)에 기름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지되어 있다.
- (3) 가스침지 축전기는 공기 외에 가스에 의해 분리된 둘 이상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체(dielectric)로서 작용한다.
- (4) 어떤 경우에는 축전기[‘유입(油入)축전기(oil filled capacitor)’]가 기름이나 그 밖의 적당한 액체를 충전시킨 용기 내에 밀폐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압력계와 안전밸브와 같은 부속장치를 갖추고 있다.
- (5) 전해 축전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극판은 알루미늄이나 탄탈륨의 것이며, 한편 또 다른 극판의 역할은 전류가 전극(때때로 알루미늄이나 탄탈륨판에 유사한 모양의 것)에 의하여 유도되는 적당한 전해액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전해 작용은 알루미늄이나 탄탈륨에 복잡한 화합물의 박막을 생성시키며, 그 화합물은 그 후에 유도체를 구성한다. 이 축전기는 때때로 용기 내에 밀폐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부의 전극 그 자체가 용기를 구성하는 것이며 ; 이러한 축전기에는 때때로 밸브의 밑바닥과 유사한 저부에 핀(pin)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축전기로써 페이스트 상태의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건식 전해축전기(dry electrolytic capacitor)’로도 불리운다.

□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

인쇄회로

■ 제8534호 해설서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양각(embossing)·도포(plating-up)·식각(etching) 등 어떠한 인쇄처리 방식에 의하여 도체소자(배선)·접촉소자나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 발생·정류·검출·변조나 증폭할 수 있는 소자(다이오드·트라이오드나 그 밖의 ‘능동(active)’소자)를 제외한다]를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블랭크(blank)’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나 접속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결합된 것도 있다.

절연기판재료는 일반적으로 평판이나, 원통형·원추형 등의 것도 있다. 회로는 기판의 편면이나 양면(이중 회로)에 인쇄되어 있으며,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 회로)도 있다.

... <중략> ...

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해서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이나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도자제·플라스틱제의 캡슐 속에 유지되어 있다.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passive)부품[예 : 인덕턴스(inductance)·축전기(capacitor)·저항기(resistor)]은 이 호의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 제8504호·제8516호·제8532호·제8533호).

기계적 소자나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주 제2호나 제90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

전자집적회로

■ 제8542호 해설서

이 호의 제품은 이 류의 주 제12호 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전자집적회로는 수동(受動 : passive)소자나 수동(受動)부품과 능동(能動 : active)소자나 능동(能動)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며, 단일의 유닛(unit)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수동(受動)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전자집적회로와 달리 개별 부품은 단일의 능동(能動) 전기기능(제85류의 주 제12호 가목에서 정의된 반도체 디바이스)이나 단일의 수동(受動) 전기기능(저항·축전기·인덕턴스 등)을 갖출 수 있다.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은 분리가 불가능하며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자구성 부품이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 요소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의 전기기능을 가지는 부품은 개별 부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메모리[예 : DRAM·SRAM·PROM·EPROM·EEPROM(또는 E2PROM)]·마이크로 컨트롤러·제어회로·논리회로·게이트 어레이(gate arrays)·인터페이스 회로 등이 있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I)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핑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이다.

... <중략> ...

(II)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ybrid integrated circuit)

이것은 박막이나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 위에 만든 초소형 회로이다. 이러한 제조 과정은 어떤 수동(受動)소자[저항기·축전기(capacitor)·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의 하이브리드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chip)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 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또한 반도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 회로에 내장되는 별도 제조된 수동(受動)소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동(受動)소자는 칩 형태의 축전기·저항기·유도자와 같은 부분품이다.

몇 개의 층으로 된 기판은 일반적으로 도자제인데, 완전한(compact)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접착된 것은 이 류의 주 제12호 나목 2)에서 의미하는 하나의 기판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중략> ...

(III)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

이것은 사실상 둘이나 그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 분리가 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나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 있는지,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能動)이나 수동(受動)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 <중략> ...

(IV)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이들은 이 류의 주 제12호 나목 4)에 언급된 회로와 구성요소들의 결합물이다.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는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하이브리드 집적회로·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와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하는 유도자를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V. 품목분류

1. FC-CSP(Flip Chip Scale Package)

결정 세번 제8534.00호

○ 개요
반도체 칩(IC)을 메인보드 PCB에 실장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패키징 기판(package substrate)으로, 도금·식각 등의 공정으로 인쇄회로(print circuit)를 형성함(크기 : 37.5 × 37.5 × 1mm).
반도체 칩에서 나오는 신호를 메인 PCB로 전달하거나, 메인 PCB에서 나오는 신호를 반도체 칩으로 전달하는 ① 도선(인쇄회로) 역할, 반도체 칩을 메인 PCB에 고정시키는 ② 버팀대(frame) 역할 등을 함.

물품 설명
스마트폰 AP*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IC;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에 장착되며, 기존 리드프레임 대신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solder ball)에 붙여서 메인(mother) PCB**와 연결하는 방식임.

* AP(Application Processor) : 스마트폰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각종 응용프로그램 구동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PC의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

* PCB(Printed Circuit Board) : 집적회로, 저항기,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을 장착하는 얇은 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IC)에 결합되는 물품이나,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류 중 특정 호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을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Printed circuits)’가 분류되고,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인쇄 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도금·식각]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 인덕터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도금·식각 등의 공정으로 인쇄회로(print circuit)를 형성한 물품으로 절연기판과 인쇄회로 외에 다른 기능을 하는 소자 등이 없으므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본건 물품과 유사한 ‘리드프레임이 결합된 인쇄회로’ 역시 제8534호에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인쇄회로’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34.00호에 분류함.

2.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

결정 세번 제8542.90호

○ 개요

반도체 칩(IC)을 메인보드 PCB에 실장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패키징 기판(package substrate)으로, 도금·식각 등의 공정으로 인쇄회로(print circuit)를 형성했고, 표면실장 기술로 축전기(120개)를 삽입.

물품 설명 반도체 칩에서 나오는 신호를 메인 PCB로 전달하거나, 메인 PCB에서 나오는 신호를 반도체 칩으로 전달하는 ① 도선(인쇄회로) 역할, 반도체 칩을 메인 PCB에 고정시키는 ② 버팀대(frame) 역할, 전기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③ 축전기 역할 등을 함(크기 : 37.5 × 37.5 × 1mm). 컴퓨터 CPU(Intel i3 3220 프로세서)로 사용되는 반도체 칩(IC)에 장착되며, 기존 리드프레임 대신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Solder ball)에 붙여서 메인(mother) PCB와 연결하는 방식임.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가 분류되며, 제8542.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제8542호 해설서에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나 수동부품과 능동소자나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 장치이며, 단일의 유닛(unit)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수동이나 능동으로 간주하는 소자나 부품에 관해서는 제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 <중략> …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IV)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 <중략> … 그러나,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으면서도 MCOs(또는 IC 패키지)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 기판(인쇄회로로 기능하는지에는 상관 없다), 골드 와이어(gold wire)나 전도영역(conductive region)]이나 구조와 기능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예 : 몰드 화합물이나 리드 프레임)은 MCOs의 부분품 / 구성요소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제8542호의 반도체 칩(IC)을 메인보드 PCB 위에 실장할 때 사용하는 부품으로, 인쇄회로가 형성된 절연기판(패키징 기판 ; package substrate)에 120개의 축전기가 개별부품 형태로 실장돼 있음.

전기회로에서 전하를 모으고 방출하는 축전기(제8532호)의 기능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인쇄회로에 축전기가 개별 부품형태로 실장돼 있으므로 ‘인쇄회로’로도 분류될 수 없으므로(제8534호 해설서 내용 참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해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90호에 분류함.

3. 다층회로기판(MLB, Multi Layer Board)

결정 세번 제8534.00-9000호

○ 개요

다층회로기판(MLB :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

물품 설명 절연재인 Prepreg의 양면에 구리 박(箔)을 합착시킨 후 회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구리박 총 10개층 중 8층에 인쇄회로 형성).

○ 용도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하 표면 구리박(箔)에 회로형성 작업과 각각의 CCL을 연결하기 위한 천공·도금 공정 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이용.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다층회로기판(MLB, Multi Layer Board)의 반제품으로서 완성된 다층회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구리박 10개 층 중 내부에 적층된 CCL 4층(회로가 형성된 구리박 8개 층)이 이미 인쇄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각(Etching)의 방법으로 인쇄된 물품이므로 ‘다층인쇄회로’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접속자 또는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부품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분류한다.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 <중략> … 수 개의 인쇄회로가 층상으로 조합되어 상호 접속된 것(다층회로)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다층인쇄회로’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올라이트 혼합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제올라이트는 1756년 광물 연구가 크롱스테드가 발견했다. 그리스어로 ‘끓는다’는 뜻의 ‘zeo’와 ‘돌’이라는 의미의 ‘lite’의 합성어다. 광물학적으로 망상 규산염 광물에 속하는 하나의 광물군 이름이다. 정확히는 알루미늄규산염(Aluminosilicate) 광물이다. 상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를 갖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합성된 제올라이트가 많이 알려져 있다.

제올라이트는 흡착성이 뛰어나 불순물 제거와 탈취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세제 첨가제, 향균제, 건축자재, 정화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제올라이트를 가축의 사료에 소량 섞어주면 가축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사료첨가제로도 이용한다.

또한 토양의 습도를 유지하고, 토양 영양소 개선 및 식물 영양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토양개량제로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제올라이트(약 90%), 효모 외 미생물, 전분, 쌀겨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로 ‘불석[(拂石), Zeolite]’인 제2530.90-6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제3002.49-2000호에는 ‘미생물 배양체’가 분류되는데, 유사한 물품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사례가 있다.

1. 유산균배양체 기체의 벌크상 물품(바실리 젯산의 배양체를 기제로 부형제 또는 담체로서 탄산칼슘과 유당 또는 전분과 유당 또는 설탕과 다당류를 함유함)
이들 물품은 의약품의 원료 또는 동물의 장내질한 및 소화촉진을 위한 사료첨가제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본 물품에 첨가된 미생물은 사용한 유기질이나 무기질 비료를 작물에 흡수하기 좋은 분자로 분해해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기 쉽게 하고 생육이나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도록 한다. 미생물 이외에 주요 성분인 제올라이트는 토양의 수분 흡수·배출·통기성 개선 등을 위해 첨가된 것으로, 단순 부형제나 담체가 아닌 것으로 봐 제300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ZEOLITES	2530.90-6000 (A 3%)	Chemical preparations	3824.99-9090 (C 6.5%)

공포의 붉은 누룩 원인은 푸른 곰팡이?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내장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일본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이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사람들에게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는 제품에 함유된 붉은 누룩(홍국)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성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고객들에게 깊이 사죄하면서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붉은 누룩을 사용해 술과 과자, 장류 등을 만들어 온 관련 식품 제조업체들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9월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붉은 누룩(홍국) 성분 물질이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른곰팡이 유래 푸베룰린산이 제품을 섭취한 피해자들에게 신장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면서 독성이 있는 푸베룰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붉은 누룩이나 관련 건강보조식품이 수입되거나 사용된 실적이 없다고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업체에 제품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킨 것을 말하고, 술을 빚는데 쓰는 당화제이자 발효제로, 밀이나 찐 콩 등 곡류를 띄워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들어진다.

관세율표에서 위에서 설명한 누룩으로부터 제조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는 제2102호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baking powder)’에 분류된다.

제2102호 해설서에서는 (A) 효모(yeasts)로 “(1) 양조 효모(brewery yeast), (2) 증류 효모(distillery yeast), (3) 베이커리 효모(bakers’ yeast), (4) 배양 효모(culture yeast), (5) 종자 효모(seed yeast)”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2호_2024.10.14.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8.)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의2 제2항”을 “제33조의5 제2항”으로,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19조”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을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제32조의2 본문”을 “제32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전용(轉用)”을 “이용 또는 전용(轉用)”으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로,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 2, 제42조, 제42조의2”를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로,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를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도와 성능을”을 “성능과 용도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2 중 “최종 사용자”를 “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내·국제”를 “국내외”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를 “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와 성능을”을 “성능과 용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를 “법 제19조의3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 제13호에 따른 사항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 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최종 사용자”를 “최종사용자”로 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제4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을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3항”을 “법 제22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수출허가”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 제5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1항”을 “법 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각각 “전략물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0조 제3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불법수출입”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제3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 제2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중 “제조, 개발, 사용”을 “제조·개발·사용”으로,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91조 제4항 제7호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 중 “법제59조 제3항”을 “법 제59조 제4항”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9조의6 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2	500	700	1,000

아. 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 3호의2	1,000	1,500	2,000
---	-----------------	-------	-------	-------

별표 4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9조 제2항 제1호”를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 제2항”을 “법 제48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121호, 2024.10.10.)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영 제13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를 “영 제13조 제3호, 제4호,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 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3의3. 영 제13조 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확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 제11조 제1항 제9호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 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하고, 등록 여부란 및 등록형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여부	[] 등록(등록통지일 :)			[] 미등록
	[] 0.1톤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나노물질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등록형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을 “처리기간 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 www.custra.com 참조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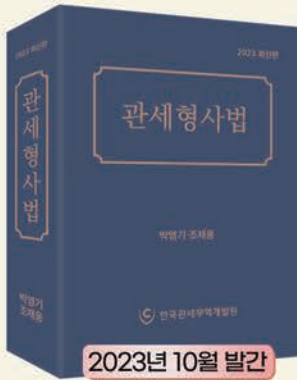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